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32
----------	-------

발의연월일 : 2026. 5. 12.

발 의 자 : 이훈기 · 이인영 · 김현정
전현희 · 박해철 · 민병덕
황운하 · 김남근 · 곽상언
이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격차가 과도하여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를 이유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도록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2조의12제1항제1호·제2호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12제1항 중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2.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의15제3항 중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할 것

2.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3.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제104조제5항제4호의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의18. 제32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1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u>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u>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 략)</p> <p>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p> <p>② (생 략)</p> <p>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u>할부판매하는 경우</u>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p>	<p>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u>----- -----.</p> <p>1. <u>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u></p> <p>2. <u>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u> 다음 각 호</p>

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

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할 것

2.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3.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